

(주)부산도시가스(이하 "공급자"라 함)와

(주소 / 대표자 성명 기입)

(이하 "사용자"라 함) 간의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가스요금, 안전관리 등 가스공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가스 공급조건)

① 공 급 장 소	부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② 상 호 / 건 물 명							
③ 사 용 용 도	☐ 영업용1, ☐ 영업용2, ☐ 업무(냉/난방)용, ☐ 열병합용1, ☐ 열병합용2, ☐ 열전용설비용1, ☐ 열전용설비용2, ☐ 산업용, ☐ 연료전지용						
(계량기 관련)		※ 40등급 초과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1]에 의해 산정한 표준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함.					
구분	종류 1	종류 2	종류 3	종류 4	종류 5	40등급 이하 합계	40등급 초과 합계
④ 계 량 기 등 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⑤ 계 량 기 개 수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⑥ 총 계 약 용 량	- m³/h	- m³/h	- m³/h	- m³/h	- m³/h	- m³/h	- m³/h
⑦ 계 량 기 관 리 비	- 원/월	- 원/월	- 원/월	- 원/월	- 원/월	- 원/월	- 원/월
⑧ 온 압 보 정 장 치	☐ 설치				☐ 미설치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사용자"와 "공급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되고,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본 계약서의 제4조, 제5조 및 공급규정에서 규정한 제반 납부금액(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보증금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납부)

①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2, 공급규정 제6조 및 제14조 ④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제 분담금(부가세 포함)을 공급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금액	합계 금액
1. 일 반 시 설 분 담 금	- (원)	- (원)
2. 수 요 가 부 담 시 설 분 담 금	- (원)	
3. 인 입 배 관 공 사 비 부 담 금	- (원)	
4. 기 타	- (원)	

② "사용자"는 본 계약서 제2조의 계량기등급 또는 계약용량이 증설되는 경우, 증설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급자"에게 추가 납부한다.

[참고] 시설분담금 산출기준 (근거 : 부산시 고시 2008-254호,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2항 및 별표2)

구분	일반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인입배관 공사비부담금
납부대상	전체 가스사용자	100M당 77m ³ /h 미만인 가스사용자	전체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기준단가(원/m ³) × 표준가스소비량(m ³)	기준단가(원/m ³) × 표준가스소비량(m ³)	인입배관 공사비 × 50%
기준단가	22,169(원/m ³) (부가세 별도)	[(표준투자비×배관연장×적용률) - (시설분담금 회수액 + 요금상감가상각비회수액)] ÷ 표준가스소비량 (부가세 별도)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 × 50% (부가세 별도)
산출내역	- m ³ /h × 22,169 원/m ³ × 1.1 (부가세)		- 원/m × - m × 0.5 × 1.1 (부가세)

제5조 (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5조에 의거, 아래 [참고]와 같이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 예정량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사용자"가 요금납부 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 공급규정 제29조 ②항에 의한 공급중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관리/교체 비용 포함)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공급자"는 예치기간 종료 후 "사용자"에게 원금과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이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5조 ⑥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년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 시 정산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변동기간별 평균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 보증 (보증보험증권 설정) 금액 : - (원)

[참고] 보증금 납부(갱신) 대상 (근거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5조)

구분	대상	예치기간	비고
공급개시 / 재공급	① 2,000㎥/월 이상 "사용자" ※ 월 사용 예정량 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2.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하고시 6-4-2조 (월 사용 예정량 산정방법)에 따른 월 사용 예정량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동 기간 중 1회 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함. 단, 가스요금 징수 사고율이 높아 체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회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3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음.	"사용자"는 보증보험 증권이 만기일 도래 1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해야 함.
계속공급 조건	① 연 3회 이상 가스요금 연체 "사용자" ② 부도, 회회,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사용자" ③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가스요금을 연체한 "사용자" ④ 공급규정 제29조 ①항에 의해 공급중지 조치받은 "사용자"	• 공급규정 제9조에 의한 해약일까지	
산출내역	- ㎥ × 10,400 kcal/㎥ ÷ 11,000 kcal/㎥ × - hr × - 원/㎥ × 1.1 (부가세) × 2 개월		

제6조 (도시가스 공급개시)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항의 해당사항이 완료되면 쌍방협의를 의하여 가스공급을 개시한다. 단, 굴착허가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지연 등의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 제4조의 제 분담금 및 제5조의 보증금이 납부 완료되어야 한다. 2. “사용자” 소유의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공급자의 공급 전 안전점검이 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보일러 시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 및 가스사용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검침 및 사용량 산정)

① 검침일은 매월 “공급자”의 지정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 ②항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7조에 따라 “공급자”는 “사용자”의 가스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당월 사용량을 결정한다. 이 때,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의 2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고장 등으로 보정장치의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7조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한다. 만약,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7조 ①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한 산정식에 의해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한다(사용량 = 검침량 × 온압보정계수). 별도의 보정장치 없이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는 아래 [참고]의 최고압력 초과 시 사용량 산정식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한다. ③ “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가스사용량이 계량되지 않을 경우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한다.

[참고]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 산정식 (근거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7조 ⑥항, 제27조 ①항 3호)

산식	세부 내용
$V = \frac{V1 \times (10,332 + P)}{10,332 + 100}$	• V : 왼쪽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 산정 사용량 (m³) •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mmAq), •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m³)

제8조 (요금의 적용 및 납부)

① 사용량에 대한 요금납부는 매월 “공급자”의 지정일에 “공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만약 지정일(납부 마감일)까지 가스요금이 미납된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 ②항의 가산금(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한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연간 3회까지)을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② “공급자”는 요금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요금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③ 도시가스 요금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요금제도 및 고시가격을 기준하여 본 계약 제2조 ③항의 사용용도별 요금단가를 적용하며, 관계기관의 가스요금 고시가격 변동이 있을 시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8조 ②항에 따라 변동가격 적용일을 기주하여 요금에 반영한다.

제9조 (“공급자”의 안정공급 의무)

“공급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 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경매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용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공급자”에게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이전 “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사용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가스요금이 비정상적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가스요금 및 그 밖의 공급규정에 의한 제반 금액(시설분담금, 공사 부담금, 보증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검침, 점검,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4.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공급자” 소유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제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에 의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급자”의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른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10.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11. 가스공급시설의 수리, 변경, 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12.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13.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14.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제한 및 중지 ② 제 ①항에 의한 가스공급의 중지나 제한 시에는 “공급자”는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본 조항에 의한 가스공급 중지 및 제한의 결과 “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배상(보상))

① “공급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 제9조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한 손해를 “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의 징수)

①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에 따라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단, 전년 동월사용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사용료를 월 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 가스 소비량에 의거 산정함.

제14조 (시설의 안전관리 및 책임)

① “공급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공급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장소의 출입 승낙)

① "사용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한 자가 "사용자"의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검침, 점검, 조사, 가스사용 제한, 공급중지 등을 목적으로 출입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자"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요청할 경우, 출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 (공사시행, 시설의 유지관리 및 계량기 관리비용)

①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 내의 "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등의 토지 경계선 내의 "사용자" 소유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가스계량기의 유지, 보수, 고장 시의 교체 등을 위한 관리비용을 공급규정 제13조 ③항 및 별표 4에 의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계량기 관리비용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도래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공급자"가 실시하고, 계량기 관리비용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 3항에 의거, 매월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⑤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 등)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러한 특수한 계량기에 대해 공급규정 제13조 ⑤항에 의거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설치, 교체 등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 (해약)

① "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에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공급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폐지에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한다. "공급자"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② "사용자"가 "공급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폐지한 경우는 "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9조 ①항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④ "공급자"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 전까지 고객에게 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제17조에서 정하는 해약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기타)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의거 소제기 상대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급규정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사용자"와 "공급자"는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 합의서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련법규 및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본 계약관련 조항의 변경 없이도 개정 내용에 준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자"는 "공급자"로부터 공급규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사용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공급자"

주소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545번지
상호 :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인)

"사용자"

주소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주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구분	수집항목	이용목적
개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정보") • 사용량, 사용금액, 결제기록, 접속기록, 공급중지기록 ("서비스 이용정보")	• 서비스 가입·심사(신용평가 / 신용정보 조회)·처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 및 부대업무 이행·보조 • 서비스 신청내용 변경 및 서비스 계약 해지 접수·처리 • 서비스 개통 / 장애처리, 품질개선 활동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해피콜 등), 경품추첨 및 배송 • 민원처리, 서비스이용 고충 확인·점검, 서비스 관련 고지사항 전달 •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의 정산 및 요금 청구·고지·결제 및 추심 • 홈페이지(www.pusangas.co.kr)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고지되어 있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위탁 • 본인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요금청구 및 요금관련 업무, 기타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연체정보 제공 및 채권추심을 위한 정보 제공 (연체 발생 시에 한함)

- 이용기간 : 사용 신청일 ~ 해약일
• 보유기간 : 요금정산, 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해결 완료일부턴 5년까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급위탁의 수탁자, 수탁업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 연체정보 제공, 채권추심 등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위탁의 자세한 내역은 www.pusangas.co.kr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주)부산도시가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라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계약의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고객 ("사용자") 및 예금주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년	월	일	고객명	(인 / 서명)